

의안번호	2211247
의 퇴 인	김종민의원
회 답 일	2025.8.29.
추계번호	25D35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4,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억 9,000만원(연평균 8억 5,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안 제210조)	849	829	849	870	892	4,290	858

주: 향후 특별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현행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재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광역연합’¹⁾ 한 곳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²⁾은 있으나 구체적 추진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아 설립 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기간 동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충청광역연합’ 한 곳으로 가정

[참고자료] 충청광역연합 개요

- 현행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³⁾ ‘충청광역연합’ 의원정수는 16명 이므로 채용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8명으로 가정하고 증원에 따른 인건비·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가정
 - － 현행법령⁴⁾은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기본연봉액에는 변화가 없고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하기 곤란

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구성

2) 광주전남권, 새만금권, 지리산권, 접경지역권 등

3) 현행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기관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⁵⁾
- 개정안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6급 1명의 2025년 연간 보수는 아래 표와 같음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⁶⁾

[표 2] 일반임기제 6급상당 1인 보수

(단위: 천원)

구 분	봉 급	수 당 등	합 계
일반임기제 6급상당 보수	66,907	5,700	72,607

주: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1인 기준)을 반영하고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5)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7.)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금 효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신규채용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8명으로 가정하고 1인당 보수를 곱한 후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표 3]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보수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 수(a)	74	76	78	80	82	390
정책지원 전문인력(b)	8	8	8	8	8	-
계(c=a×b)	595	609	624	639	654	3,120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기관부담금

- 산출된 보수에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면 기관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추계됨

[표 4]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관부담금	78	80	82	85	88	4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기본경비

-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의 분야별 지출 규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는 인력운영비 대비 23.0%⁷⁾임
-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에 지방자치단체 평균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고 해당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경비	137	140	143	147	150	7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7) 인력운영비 38조 2,196억원, 기본경비등 8조 7,893억원

라. 자산취득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6년에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자산취득비도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표 6]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자산취득비	40	-	-	-	-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 결과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억 4,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2억 9,0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보수	595	609	624	639	654	3,120
기관부담금	78	80	82	85	88	412
기본경비	137	140	143	147	150	718
자산취득비	40	-	-	-	-	40
합 계	849	829	849	870	892	4,2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현재 출범이 완료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경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홍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홍연	02-6788-4673	limhy@nabo.go.kr

[참고자료] 충청광역연합 개요

□ 충청권 지역 현황

구분	합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인구 (‘24.10월)	555.6만	144만	38.9만	159.1만	213.6만
면적	16,658.6km ²	539.5km ²	464.9km ²	7,407.0km ²	8,247.2km ²
행정구역	—	5개 구, 82동	1읍9면12동	3개 시, 8개 군	8개 시, 7개 군
예산규모 (‘24년)	25조2,912억원	6조5,329억원	1조9,059억원	8조184억원	8조8,340억원
지역내 총생산 (‘22년 기준)	271.9조원	49.5조원	14.5조원	79.4조원	128.5조원

□ 설치 개요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205조, 충청광역연합 규약
- (설치형태) 「지방자치법」 제2조 ‘특별지방자치단체’
- (주요업무) 초광역 협력을 위해 구성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 및 국가 위임사무 등 충청광역연합 규약 내 합의된 공동사무 추진

- ▶ 시도이관(20): (인프라) 도로, 철도, 교통, UAM (사회·문화) 문화, 관광, 환경, 생태 (산업·경제) 첨단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부품, 첨단 코스메틱 등 (국제교류) 국제교류협력
- ▶ 국가위임(1): (인프라)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

□ 조직 현황

- (기구·정원) 2개 사무처 60명(연합 사무처 41, 연합의회 사무처 19)
 - (연합사무처) 1처 3과 11팀, 41명
 - (연합의회 사무처) 1처 1담당관 3전문위원(직속) 2팀, 19명

□ 충청광역연합의회

- (의원정수) 16명(시도별 4명 균등 배분)
- (의원임기) 임기 2년(연임 제한)
- (의장·부의장) 의장 1명, 부의장 2명
- (주요업무) 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구성 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등